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정책사업이 여러 조직에 걸쳐 있을 경우의 사업구조화

❏ 질 의 ❏

- 정책사업이 불가피하게 두 개의 실·과에 걸쳐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은?

❏ 회 신 ❏

- 정책사업은 단일한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 1인이 존재해야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가 용이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의 실·과에 정책사업이 속해 있어야 함
- 다만, 1개의 정책사업이 2개 이상의 실과에 걸쳐 있을 경우 실·과별로 각각 별도의 정책사업을 설정함

2. 단위사업에서의 회계 구분

❏ 질 의 ❏

- 단위사업에서 회계구분을 하는 이유

회신

-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정책목적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주머니에 따라 칸막이식(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어 전체 사업을 한 눈에 조망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즉 사업의 중복 실시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어렵게 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위한 서로 다른 회계를 단위사업 수준에서 구분하여 하나의 정책사업 밑에 편제하도록 하고 있음

3. 읍면동의 사업구조화

질의

- 읍면동의 경우 사업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지

회신

- 읍면동은 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구 분청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만 편성하고 별도의 정책사업을 설정하지 않음
-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분야·부문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게 되면 정책사업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수를 최소화 하도록 함

II. 예산의 편성

1. 의정회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가능 여부

질의

- △△시 승격 기록물 발간사업관련 의정회에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한 지

|| 회 신 ||

- △△구청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2004.4.23. 선고 2002 추16) 판결의 취지는 의정회의 주된 목적과 사업이 특정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구청장(원고)이 의정회 설립과 추진사업에 반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확인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보아 의정회 사업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회원들의 회비징수 등으로 그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료됨
- 위 판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정책팀-458(2008.1.22)호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하여 개정 등 권고를 한 바 있으므로 질의사항은 관련 공문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지방의회 예산삭감 관련

|| 질 의 ||

-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구청장, 부구청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를 구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의회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으며, 또한 동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질의와 같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7조의 지방의회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의요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3. 학교시설 수해복구비 지방비부담 관련

Ⅰ 질 의 Ⅰ

- 교육청 소관 학교건축물의 수해복구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중 “도비 부담”을 “도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지 또는 “도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Ⅰ 회 신 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재난 발생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되어 있고
- 또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없이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 건축물 피해와 관련한 지방비 부담 중 “도비 부담”은 “도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기부금의 예산편성 사용

Ⅰ 질 의 Ⅰ

- 기업체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하였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기업체에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

Ⅲ.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홍보물품 구입비 예산편성과목

Ⅰ 질 의 Ⅰ

- 불특정 시민과 기관방문자 등에게 시 브랜드슬로건의 홍보목적으로 소모성 물품(예: 볼펜, 명함케이스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구입 제작하여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중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토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같은 단순 기관방문자를 위한 기념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대단위 시책홍보를 위한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2. 보조금으로 설치한 CCTV 회선사용료 지원

Ⅰ 질 의 Ⅰ

- △△군에서는 지역내 농산물 도난방지를 위하여 방법용 CCTV를 유관기관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설치하였으나, 설치후 CCTV회선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부조건을 명시하고 필요시 사후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사안은 보조금의 교부시 지원조건 등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3. 민간자본보조금 교부시기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는 공사비인 경우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인 경우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라고 되어 있음.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 교부결정과 동시에 교부가 불가능한지
- 읍면동 단위 마을회가 경우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Ⅰ 회 신 Ⅰ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귀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거 당해 사업성격에 따라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읍면동 마을회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4. 잔여 예산으로 물품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속복사기 항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으로 복사기를 구입 하였음. 잔여 예산이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돈으로 부서의 노후된 프린 트기를 대체하고자 프린 트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자금지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하여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될 경우 예산편성시 예측 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 지출수요 발생시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편성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전용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참고하여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구체적으로 예산서의 부기가 없는 물품을 집행잔액으로 구입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시급성, 필요성과 지방의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5.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편성

❏ 질 의 ❏

- 독립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공사 설계비를 민간대행사업비(402-02)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규정된 민간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도 독립병원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함

6. 예비비 사용 결정후 미집행시 예비비 환원 여부

■ 질 의 ■

- 예비비 요구에 의하여 배정했는데, 사업부서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음.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사장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회 신 ■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경비의 성질상 예비비로 사용토록 결정한 경비를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음

IV. 예산의 변경 관리

1. 이월예산의 운영 방법

■ 질 의 ■

- 이월예산은 어떻게 운영 하나요

■ 회 신 ■

-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아 「예산 현액」으로 관리
- 이월예산은 동일 목적을 가진 이월하는 연도의 세부사업과 함께 관리
 - 다만, 이월결정시 동일 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기구조화된 사업 목적이 유사한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신규로 세부사업 설정 관리

- 이월예산 확정시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함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명시이월비 의회승인액과 최종확정액과의 관계

Ⅰ 질 의 Ⅰ

- 명시이월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월액을 승인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지출액의 변동이 생겨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거 이월예산 확정시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명시이월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50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금액을 초과하여 확정할 수 없을 것임

3. 예산변경 사용시 세부사업 신설

■ 질 의 ■

- 예산의 변경사용시 세부사업 신설 및 부기명 변경이 가능한지

■ 회 신 ■

- 변경사용하는 단위사업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 사용이 가능하나,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사업 신설 및 부기명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할 사항임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을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다만, 이 원칙에 모든 세출예산이 집행 될 경우, 예산편성 시 예측되지 않은 재해대책 등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 제도임
- 따라서, 예산 전용과 변경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예산 이체시 신규사업 신설

■ 질 의 ■

- 조직 개편으로 사업을 이체 받아야 하는 부서의 정책사업이 이체하는 사업의 분야·부문과 틀린 경우, 주는 부서의 분야·부문에 맞추어 정책·단위사업을 신규로 만들어 이체가 가능한지

■ 회 신 ■

- 이체는 사업의 목적,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의 내용과 분야·부문의 정보가 변경될 수는 없음
- 따라서, 이체를 받는 부서에 동일한 분야·부문의 정책·단위사업이 없는 경우는 정책·단위사업을 신규로 신설하여 이체하여야 함
- 단, 이체의 최소 단위인 세부사업은 분할·합병이 불가능 하므로 기존 부서의 세부사업을 그대로 이체 받아야 함

V. 지방예산절감

1.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의 차이

Ⅰ 질 의 Ⅰ

-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Ⅰ 회 신 Ⅰ

- 예산절감은,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일을 없애거나 낭비요소를 찾아내고 제도개선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과다하게 투입되는 예산을 아껴 사용하자는 것임
 - 절감한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예산절감을 통해 국민에 대한 복지 등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
- 긴축재정이란, 경기가 과열할 가능성이 있거나 세입세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증세 등에 의한 세입확충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비의 절감 등에 의해 세출규모를 축소하는 재정운용 정책이며
 - 국민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국민서비스에 대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2. 예산 편성상 절감의 개념

Ⅰ 질 의 Ⅰ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절감의 의미는 무엇인지

Ⅰ 회 신 Ⅰ

-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것임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

-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신규사업은 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원가산정방식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VI. 지방예산 용어 해설



가용재원(可用財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함.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 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일컫음.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이러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임. 가용재원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일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한 모든 재정지출에 사용되는 재원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계수조정(計數調整)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서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임



매칭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임.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으로 도입함.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임

일반적으로 “matching fund”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하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후 국가예산을 부담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법상 제도화된 방식은 아님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국가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발전의 정체와 재정기반 약화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간 과열 유치경쟁 유도 및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한다는 부작용이 있음



본예산(本豫算, main budget)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50일 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전, 시·군·구는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됨. 그 밖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총예산 또는 일반회계 예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함



세출(歲出)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

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실행예산(實行豫算, executive budget)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성립된 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하는 예산을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 실·과에서는 이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실행예산의 주목적은 경제안정대책·경기조절대책 및 재정적자의 보전(補填) 등에 있으며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임



예산(豫算, budget)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됨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의 경우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의회에서 의결 되기 전에 지방자치 단체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지방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음.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 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